

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2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안내

2022-09-16
학생복지 장학위원회

연번	장학 성격	구분	기준금액	선발기준/제출서류	1차 등록대체	2차 12.09	3차 01.30.	4차 02.15.	비고	신청 방법		
1	등록금	교직원장학	수업료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본교 재직 중인 교직원 또는 직계가족(배우자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직원의 근무(계약) 기간을 참고하여 심사 후 수혜여부 결정 ※ 수혜기준 : 전공심화과정 교직원이 중도 퇴사(입사)하는 경우 퇴사(입사)일이 수업일수 1/2 초과시 전액 수혜 (이외 수업일수는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확정) ■ 제출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직원 본인 : 재직증명서 - 교직원 직계가족 : 가족관계증명서, 해당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* 신규(복합)장학생 서류제출 필, 복학으로 인한 갑연 누락자 학과 신청 	●	● (누락자)			★계속장학	학과 신청		
2	등록금	다문화장학	1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학생(한국 국적)이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자 ※배우자는 제외 ■ 제출서류 : 가족 중 외국인임을 증명가능한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※ 제출서류는 기본증명서만 제출가능 주민등록등본, 여권 서류 안정 불가 		●				학과 신청		
3	등록금	보훈장학금	수업료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국가유공자 자녀, 5·18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, 특수임무수행자 자녀 등의 대학 수업료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외) 경기남부보훈지청 교부금 - (교내) 국제대학교 장학금 ■ 제출서류 :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(보훈지청발급) ■ 유의사항 : 증명서상 "이미 면제받은 수혜내역"의 입학금, 학기수 확인 필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입생 : 입학금 50%, 수업료 50% - 재학생 : 수업료 50% 	●	● (누락자)			★계속장학 입시처 협조	학과신청		
			입학금50%									
4	등록금	북한이탈주민장학	수업료5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교외) 남북하나(북한이탈주민지원)재단 - (교내) 국제대학교 장학금 ■ 제출서류 :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(통일부발급) ※ 증명서상 "비고"의 수혜 횟수, 전이기간 및 횟수 등 확인 필요 - 신입생 : 입학금 50%, 수업료 50% - 재학생 : 수업료 50% 	●	● (누락자)			★계속장학 입시처 협조	학과신청		
			입학금50%									
5	등록금	외국인내재장학	수업료 30% (입학 학기1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정원내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※ 유의사항 : 외국인내재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 - 신입생 : 입학금 100%, 수업료 30% - 재학생 : 토익(TOPIK)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L 수업료 30% : 토익(TOPIK) 3급 L 수업료 40% : 토익(TOPIK) 4급 L 수업료 50% : 토익(TOPIK) 5급 이상 ※ 감면입(후지급자는 신청일)기준 토익(TOPIK) 자격 유지(유효)여부 확인 	●	●			★계속장학 입시처& 국제교류 센터 협조	국제교류센터 신청		
			입학금 100%									
			수업료 30%									
			수업료 40%									
			수업료 50%									
6	등록금	외국인특별전형장학	수업료 30% (입학 학기1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외국인특별전형 학생 중 성적 및 인성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 ※ 유의사항 : 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입학장학 종류 수혜 불가 - 신입생 : 입학금 100%, 수업료 30% - 재학생 : 토익(TOPIK)성적과 인성이 우수한 학생 추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L 수업료 30% : 토익(TOPIK) 3급 L 수업료 40% : 토익(TOPIK) 4급 L 수업료 50% : 토익(TOPIK) 5급 이상 ※ 감면입(후지급자는 신청일)기준 토익(TOPIK) 자격 유지(유효)여부 확인 	●	●			★계속장학 입시처& 국제교류 센터 협조	국제교류센터 신청		
			입학금100%									
			수업료 30%									
			수업료 40%									
			수업료 50%									
7	생활비	성적우수장학 1종 (생활비)	1,0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과(전공)별 수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인원 15명 이상 ※ 등록인원 15명 미만 과(전공) 제외, 전공심화 제외 ■ 선발기준 : 과(전공)별 차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인원 35명 이상 ※ 등록인원 35명 미만 과(전공) 제외, 전공심화 제외 ■ 선발기준 : 과(전공)별 3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록인원 60명 이상 ※ 등록인원 60명 미만 과(전공) 제외, 전공심화 제외 					교학1팀 (교무) 협조	분부 선발		
		성적우수장학 2종 (생활비)	800,000									
		성적우수장학 3종 (생활비)	500,000									
8	등록금	생활복지장학1종 (등록금감면)	수업료100%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선발기준 : 등록금 선감면 기간에 국가장학 소득분위(0-2) 장학생 중 1유형 수혜자 (공통사항) 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직전학기 12~15학점 이상 -18학년 이전 입학 : 15학점 이상 필수이수 -18학년 입학 부터 : 12학점 이상 필수이수 ② 74점(평점평균 2.00점)이상의 성적 ★유의사항 : 생활복지장학1종으로 등록금을 감면 받거나, 수업료 전액 수혜자는 장학금으로 전액 등록금 감면 받았으므로 후지급 신청자의 없음 유형①<국가장학 수혜자> 국가장학 소득분위(0-2)장학생 중 국가장학 1유형 수혜자 ■ 선발기준 : 국가장학금 소득분위(0-2)이면서 교내장학금 기준에 적합하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득분위 심사가 지연되거나, 신입생으로서 생활복지장학 1종으로 등록금 선감면 받지 못한 학생 ■ 제출서류 : 없음 	●	●			명단 참조	분부 선발		
		생활복지장학1종 (학생지급)	수업료100%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유형②<국가장학 미수혜자> ①-1. 국가장학을 신청하여 소득분위가 0-2분위로 확인이 되나, 성적 또는 수혜횟수 초과 등의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 ■ 제출서류 :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발급 방법 :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→장학금→증명서발급→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발급→발급하기 ②-2. 국가장학 미신청자로 소득분위가 확인되지 않으나,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관련자(기초생활 수급자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■ 제출서류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생계/의료) - 기초생계급여수급자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*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		●					

2022학년도 교내장학 운영 세부 계획 및 2학기 교내장학금(3차) 신청 안내

2022-09-16
학생복지. 장학위원회

연번	장학 성격	구분	기준금액	선발기준/제출서류	1차 등록대체	2차 12.09	3차 01.30	4차 02.15.	비고	신청 방법		
9	등록금	생활복지장학2종	1,500,000	<p>■ 선발기준 : 신청자 본인이 장학금 신청일 기준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 곤란자 (차상위계층 수급자격)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</p> <p>■ 제출서류 : 정부에서 인정하는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중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주거/교육) : 기초주거급여수급자, 기초교육급여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증명서 :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: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④ [중증]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: 차상위장애수당/장애아동수당대상자 ⑤ 자활근로자 확인서 : 차상위자활대상자 ⑥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: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⑦ 차상위 계층 확인서 : 차상위 계층 대상자</p> <p>■ 제출서류 발급처 * 본인 명의의 담 증명서 제출 ① 기초/차상위 서류 - 주민자치센터, 온라인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장애인 증명서류(본인 명의 장애인 증명서) - 읍면동주민자치센터, 정부24</p>		●				학과 신청		
10	등록금	생활복지장학3종	1,000,000 직계가족 동시재학	<p>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배우자, 형제지매 포함) 동시에 재학하는 경우 * 간 영예게만 지급됨 * 다만, 동시에 재학하는 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</p> <p>■ 유의사항 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계가족 중 한명만 교내장학금 신청 * 1학기 재학 하는 경우만 해당 (지급일자 기준 직계가족 중 한명이 휴학상태인 경우 탈락)</p> <p>■ 제출서류 : 직계가족 학생의 국제대학교 재학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</p>		●				학과 신청		
			1,000,000 본인 또는 직계가족 장애중증/경증	<p>■ 선발기준 : 본인 및 직계가족(본인, 배우자, 형제지매 포함)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 중합장애 정도로 확인 - (중증) 정도가 심한 장애로 표시 - (경증)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표시</p> <p>■ 제출서류 : 장애인증명서, 직계가족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 인영 불가</p>		●						
11	등록금	생활복지장학4종 (학생지급)	수업료100% 또는 일정금액	<p>■ 선발기준 : 국가장학 소득분위(0-8) 장학생 중 학업지속이 어려운 자에게 학비 부담을 덜어주고,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를 조성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장학금 지원 ※ 학생복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예산에 따라 지급함 ※ 장학예산에 따라 기준금액은 수업료 100% 또는 일정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음</p>			●			본부 선발 또는 학과 신청		
12	등록금	희망장학금	일정금액	<p>■ 선발기준 :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렵게 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,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자 ※ 학생복지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장학예산에 따라 지급함 <선발에서> - 소득분위 3분위로 국가장학금 최대금액지원 해당자이나, 타학교에서 편입하면서 수혜횟수가 초과되어 국가장학금 [거절]된 학생 - 가정형편(상황)이 갑자기 어렵게 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</p> <p>■ 제출서류 : 경제사정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(①-④의 항목을 모두 제출해야 인정) - 증명서류 : ① 학교장 추천서 ② 학과 회의록 ③ 본인 자술서 ④ 가정형편(상황)이 곤란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(예 : 활동내용, 통장사본, 병력인원증명서, 소득금액, 국가장학 소득구간 통지서 등)</p>				●		본부 선발		
13	대가성	국가근로장학금	일정금액	<p>■ 제출서류 : 월별 출근부 학생취업지 제출 - 출근부 관리 : 행정부서, 학과</p>					매월지급	본부 선발		
		행정부서근로장학	일정금액	<p>■ 국가근로장학금(교내근로, 기관근로) ■ 행정부서근로장학(교내근로)</p>								
14	생활비	마일리지장학1종	500,000	<p>■ 선발기준 : 비교과·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이수 및 동아리 활동으로 받은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지급</p> <p>■ 지급기준 - 1종(마일리지 70점 이상 누적자) - 2종(마일리지 50점 이상 누적자) - 3종(마일리지 30점 이상 누적자)</p> <p>① 마일리지 장학금 지급 대상은 재학생(다. 당해학기 성적에 인정받은 휴학생은 지급 가능)에 한하며, 장학금액 및 대상인원, 장학금 지급 기준 마일리지 포인트는 당해 장학금 지급예산 범위를 고려하고 상대평가하여 결정 ② 마일리지 별 장학금 지급 기준은 장학 예산에 따라 학생복지 장학위원회의 통해 변동될 수 있음</p> <p>■ 제출서류 : 비교과·인성교육센터 및 동아리 마일리지 점산 서류</p>				●	비교과인성 교육센터 장학생 추천	학과 신청		
		마일리지장학2종	400,000					●				
		마일리지장학3종	300,000						●			
15	생활비	봉사장학금 1종(생활비)	1,500,000 (총학생회장)	<p>■ 선발기준 : 학과선발 ※ 특히 학회장, 부학회장 변동한 경우 -> 교학2팀(학생) 변동 요청 후 승인</p>						학과 신청		
		봉사장학금 2종(생활비)	1,000,000 (총학생회부회장)	<p>■ 세부기준 ① 총학생회 부장(6명) - 총무, 기획, 복지, 체육, 홍보, 인권 ② 총학생회 차장(5명) - 기획, 복지, 체육, 홍보, 인권 ③ 대학신문발송국(학보사, 발송국) - 학보사(2명) : 편집부장, 기획부장 - 발송국(2명) : 실무국장, 총무국장 ④ 폐과예정 학회장은 2학년 반대표를 겸직하고 장학금 신청 시에는 봉사장학금 2종(학회장)으로 신청</p> <p>※ 봉사장학금 중복 시 상위 장학금 지급</p>								
		봉사장학금 3종(생활비)	800,000 (총학생회 부장)									
		봉사장학금 8종(생활비)	300,000 (총학생회 차장)									
			300,000 (학과 부학회장)									
			300,000 (학과 총무)									
			300,000 (학과 반대표)									
		300,000 (학보사)										
300,000 (발송국)												
16	포상성	장애학생도우미장학금	500,000	<p>■ 선발기준 :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도우미 지원계획에 따라 선발 선발된 학생은 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및 학습편의를 위해 도우미로 활동하며 ※ 학생복지 장학위원회의 활동일지 작성평가 후 장학금 지급여부 결정 ■ 제출서류 :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지 제출</p>			●		장애학생 지원센터 협조	학과 신청		
17	생활비	특별 장학금	일정금액	<p>■ 선발기준 : 학생복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된 학생 - 학교의 명예 및 홍보가 된 학생 등(장학규정 특별장학금 내용 참조) - 외국인 유학생 관리(4명, 학기당 1,000,000원) - 학식위원회 (학기당 300,000원) - 기타</p> <p>■ 제출서류 - 학식위원회는 학기가 끝난 후 총학생회를 통해 학식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출</p>			●			본부 선발 학생 생활관 협조		